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2. 9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6년 1월 19일
- 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7명
- 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2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2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관련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조·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개정 배경 및 취지

- 현행 조례는 2015. 9. 24.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, 조례에서 인용한 「지진재해대책법」 및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의 제명이 각각 「지진·화산재

해대책법」(2016. 1. 25.) 및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(2016. 12. 23.)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인용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조문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,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전임.
- 한편, 본 조례에 따른 ‘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’은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, 현재까지 지진 발생 사례가 없어 실제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, 안전교통국장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음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(목적)는 인용 상위법령을 기존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서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 제명에 맞게 정비한 것임.
- 안 제7조(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)은 다중이용시설의 정의에 관한 인용 법령을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에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으로 제명을 변경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인용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,
- 이를 통해 조문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1. 19.

발 의 자: 이순우·유승용·이성수
남완현·정선희·우경란
김지연·전승관 의원(8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관련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조·제7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”를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후단 중 “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 조 (목 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) ① (생략) ②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 및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. ③·④ (생략)</p>	<p>제7조(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-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제1항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